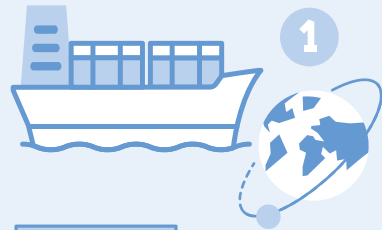


2021 외국투자자를 위한 통관가이드





2021
외국투자자를 위한
통관가이드



CONTENTS

현물출자완료확인

| | | |
|-----|--------------|-----|
| 제1장 | 자본재 통관절차 흐름도 | 006 |
| 제2장 | 통관절차 | 007 |
| 제3장 | 유의사항 | 008 |
| 제4장 | 현물출자 완료확인 | 009 |

수출입통관

I

수입통관

| | | |
|-----|---------------------------------|-----|
| 제1장 | 의의 및 용어정의 | 010 |
| 제2장 | 일반통관절차 | 011 |
| | 제1절 수입신고 | 011 |
| | 제2절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 016 |
| | 제3절 물품검사 | 018 |
| | 제4절 수입신고수리 | 020 |
| | 제5절 신고납부 | 024 |
| | 제6절 부과지 | 027 |
| | 제7절 전자통관심사 | 028 |
| 제3장 | 간이통관절차 | 029 |
| | 제1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및 합산과세 기준 등 | 029 |
| | 제2절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한 신고 | 031 |
| 제4장 | 수입신고수리후 확인 | 032 |
| 제5장 |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절차 | 034 |

II 수출통관

| | | |
|-----|-------------------|-----|
| 제1장 | 정식통관절차 | 038 |
| | 제1절 수출신고 | 038 |
| | 제2절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 040 |
| | 제3절 물품검사 | 042 |
| | 제4절 수출신고의 수리 | 045 |
| | 제5절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 046 |
| | 제6절 특수형태의 수출 | 048 |
| 제2장 | 간이통관절차 | 049 |
| 제3장 | 수출물품의 적재 이행관리 | 050 |

III 특송물품통관

| | | |
|-----|----------|-----|
| 제1장 | 정의 | 052 |
| 제2장 | 특송물품의 통관 | 052 |

IV 우편물통관

| | | |
|-----|-------------------|-----|
| 제1장 | 개관 | 056 |
| 제2장 | 우편물 목록제출 및 우편물 검사 | 057 |
| 제3장 | 우편물 통관 | 057 |
| 제4장 | 심사대상물품의 신고 및 수리 | 059 |
| 제5장 | 보세운송 및 반송 등 | 062 |

CONTENTS

V 여행자 휴대품통관

| | | |
|-----|-------------------|-----|
| 제1장 | 총칙 | 063 |
| 제2장 | 휴대반입물품신고 | 064 |
| | 제1절 신고절차 | 064 |
| | 제2절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 067 |
| | 제3절 크루즈여행자 선상일괄신고 | 068 |
| 제3장 | 입국여행자 휴대품통관 | 069 |
| | 제1절 통관심사 | 069 |
| | 제2절 면세통관 | 071 |
| | 제3절 과세통관 | 074 |
| 제4장 | 반송 | 075 |
| 제5장 | 출국시 세관절차 | 076 |
| 제6장 | 세금의 사후납부 | 077 |
| 제7장 |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통관 | 077 |

VI 이사회물 통관

| | | |
|-----|--------|-----|
| 제1장 | 총칙 | 080 |
| 제2장 | 이사회물통관 | 081 |

VII 출·입국 외환신고

| | |
|------------|-----|
| 출국시 외환신고 | 088 |
| 유의사항 | 088 |
|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 089 |
| 관련규정 | 089 |
| 입국시 외환신고 | 089 |
| 신고절차 | 089 |
| 관련규정 | 090 |
| 벌칙 | 090 |

VIII 보세공장제도

제1장 정의 090

제2장 설치·운영의 특허 091

제3장 반출입 절차 096

제4장 특별(귀금속류 등) 보세공장 관리 110

제5장 자율관리보세공장 112

F T A

I FTA 일반현황

제1장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14

제2장 FTA체결현황 116

II FTA 활용

제1장 원산지결정기준 119

제2장 원산지증명서발급 120

제3장 인증수출자 제도 121

제4장 원산지확인서 122

제5장 원산지검증 123

관세종합상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관세상담 125

무역협회를 통한 FTA상담 125

현물출자완료확인



제1장 자본재 통관절차 흐름도

• 투자신고

- ① 신고기관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② 제출서류 : 투자신고서 2부(조세감면업종의 경우 조세감면신청서 3부)

•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확인

- ① 신청기관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② 확인대상 : 관세면제대상자본재
- ③ 제출서류 : 신청서 3부, 가격증명서류(예 : 물품매도확약서 등)

• 통관

- ① 관세면제대상 자본재의 경우 제출서류
 1. 면제신청서 1부
 2.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3.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투자신고서) 사본, 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입금확인서
 4. 조세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결정서) 사본
 5. 송장, 가격신고서, B/L, AWB, 포장명세서(해당물품에 한함),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226조에 정한 허가, 승인등의 증명 및 확인이 요구되는 서류, 보세운송신고서(이교된 물품의 경우),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통관

● **현물출자완료확인**

- ① 신청기관 : KOTRA 관세청 파견관
- ② 구비서류 : 신청서 2부, 수입신고필증 사본

대상 : 출자의 목적물로 납입(현물출자)되는 경우에만

● **회사설립등기**

- ① 신청기관 :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
- ② 제출서류 : 신청서, 기본서류에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추가

대상 : 출자의 목적물로 납입(현물출자)되는 경우에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① 신청기관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② 제출서류 : 신청서, 기본서류에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추가

대상 : 출자의 목적물로 납입(현물출자)되는 경우에만

제2장 통관절차

● **수입신고**

외국인 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의 수입통관 절차는 일반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와 마찬가지로 세관장에게 직접 수입신고를 하거나 관세사에게 대행시킬 수도 있다.

수입통관 절차



입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심사)



신고수리
(통관)

제3장 유의사항

● 서류제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라도 반드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 등 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다.

● 자본재도입 전에 사업자등록

출자의 목적으로 도입하는 자본재(현물출자)로서 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 자본재도입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 감면금액

감면되는 자본재에는 기계 등외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고, Supervisor Fee 나 Installation Fee 등이 과세가격에는 공제 요소지만 감면금액에는 포함시켜 전체 도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즉, 자본재 도입 시 마다 총투자신고금액에서 수입신고서상의 과세가격(CIF금액)으로 차감하면 안되고, 결제금액 기준으로 차감하여야 한다.

자본재 = 기계 등 + 운임 + 보험료 + Supervisor Fee + Installation Fee 등
과세가격 공제요소 = Supervisor Fee + Installation Fee 등

● 유의사항

수입신고시 제출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상에 기재된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을 확인하여 '면제신청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자본재 도입에 따른 면제 신청시 관세 등의 면제기한 확인

외국인투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감면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5(관세 등의 면제)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4장 현물출자 완료확인

● 출자완료확인

- ①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자본재(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동 자본재 통관 후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2부와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nvest KOREA에 파견된 관세청 파견관으로부터 현물출자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외국투자자가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의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서로 본다.
- ③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은 자본재가 여러번 분할하여 통과되는 경우에는 동 자본재가 최종적으로 통관된 후에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이며 즉시 처리가능하다.

● 출자완료통보

관세청장은 현물출자완료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자본등재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의 목적물로서의 자본재도입이 완료되면 출자완료 확인서를 받아 관할법원에 자본등재를 하고,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출입통관



I | 수입통관

제1장 의의 및 용어정의

- **의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용어정의**

1. “심사”라 함은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급망”이란 물품의 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과 관련된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
4. “전자통관심사”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하여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일반통관절차

제1절 수입신고

●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 신고세관

-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인

수입신고나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의 방법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서가 통관지세관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 수입신고

- 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P/L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인이 전송한 수입신고서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이하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발생 사실을 전산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동일한 신고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신고자료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정정전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이상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다음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접수여부와 서류제출대상 여부
2. 검사대상여부
3. 신고납부대상물품의 경우 납부서번호
4.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처리담당직원의 부호

●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전자 서류, 종이서류를 포함)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2. 부과지대상물품
3.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4.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5. 세관장확인물품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6.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 공물품과 계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8. 신고취하되거나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9.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보세판매장반입물품과 선(기)용품 수입물품
10.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11.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12.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 물품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13.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14.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15.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직 통관을 신청한 물품
 16.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② 관세청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차등 선별할 수 있다.
1. 수입업체의 성실도
 2. 수입신고인의 성실도
 3. 최초 수입업체와 물품
 4. 수입신고 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5. 그 밖에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 ① “무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
 3. 원산지증명서
 4. 포장명세서
- ②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무역서류는 수입화주의 공인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① 신고인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시 제출)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부분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분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
9. 「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증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 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 「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 물품에 한한다)

②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김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3.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또는 주한미군에서 전자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5. 부과고지 대상물품
6. 신고수리전 반출대상물품
7.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8.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이나 수입회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원본 제출대상은 제외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수리전이거나 신고수리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신고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신고수리후에 제출하여도 통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전자서류는 원본으로 본다. 다만,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 B/L분할신고 및 수리

-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 ②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신고의 취하

- ①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② 수입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수입신고취하 승인으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

● 신고의 각하

- ① 세관장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멸각,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3.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절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 신고서처리방법

- ①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검사와 심사
 2. 심사
 3. 전자통관심사
- ② 세관장은 P/L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 분석의뢰

- ①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② 분석대상 시료는 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와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 전문가의 취급이 필요한 시료는 담당직원이 채취과정에 입회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의 직접채취를 대신할 수 있다.
- ③ 분석은 신고수리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전에 분석한다.
 1.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심사를 위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 ④ 세관장은 수리전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E-mail, FAX,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보완요구

- ① 다음중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심사 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3. P/L 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서류제출 변경 요구)
- ②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이나 수입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이나 수입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신고인이나 수입화주가 지정기간내에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거나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무상으로 반입되는 하자보수용 수리부품에 대하여는 최초 도입 기계류의 수입신고필증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수입 신고서 신고인기재란에 기재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통관보류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세범칙혐의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4.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5. 그 밖에 통관심 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
6.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제3절 물품검사



● 검사대상여부의 통보

- ① 검사대상여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신고인이 수입화주가 아닌 관세사인 경우 검사대상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수입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검사입회 및 검사절차

-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검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검사입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검사 입회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검사입회는 신고인이나 그 소속 종사자가 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이 검사입회통보서를 발급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⑤ 검사자는 물품검사 시 검사장소 관리인이나 수입화주에게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인부의 배치 등 검사준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준비가 되지 않아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순위를 조정하여 검사준비가 된 때에 검사를 실시한다.
- ⑥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하는 경우 채취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수입 화주가 부담한다.
- ⑦ 신고인은 물품을 검사할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⑧ 장소협소, 검사장비·인력 부족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취하 후 검사장비 확보 등 검사가 가능한 보세창고(화주 소재지 보세구역외 장치장 포함한다.)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 구역 관할세관에 재수입 신고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검사방법

-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체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 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을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 ②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 임시개청

- ①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임시개청 신청(통보)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수입신고서는 당해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
1. 근무시간이후에 접수된 경우
 2.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건으로서 근무시간내에 적하목록(하역신고 포함)이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세구역도착전 신고건으로서 보세창고에 반입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수입요건확인서류를 근무시간내에 구비하지 못한 경우
- ③ 수입과장은 근무시간종료 30분 전에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한다.

제4절 수입신고수리



• 신고수리

-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신고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 요건이 완료된 때 신고수리한다.
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은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 다만, 수입 신고전에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
 2.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은 보세운송 도착보고된 때(하역절차에 따라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때에는 반입신고된 때)
- ②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거나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 ③ 신고서 처리기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
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으로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은 적하목록 심사완료일. 다만, 수입신고전에 적하목록 심사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일
 2.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물품의 검사장소 반입일
 3.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은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도착일
 4.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물품은 수입신고일
 5.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은 수입신고일

- ④ 신고수리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가 되었음을 통보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 시점으로 한다.

● 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 ① 세관장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 ② 관세 등의 수납여부 확인은 수납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전송한 영수필통지에 의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없는 수납기관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관에서 우송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이때 담당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수납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신고필증교부

-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수입신고서에 세관 특수청인을 직접 찍어서 교부
- ②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출한 증빙자료를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 신고수리전 반출

-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②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신고수리전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신고수리전 반출기간 중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 도래 전에 수입화주나 비축물자 수입자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의무이행의 요구

- ① 세관장이 신고수리시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의 내용을 신고 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의무 이행요구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의무이행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의무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의무면제 신청(승인)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 승인, 추천 기타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관련 개정내용 등을 기재한 사유서
 3.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서(사본을 포함한다)

● 신고인의 서류보관관리

- ① 신고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고인별, 신고번호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③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 ④ 신고인은 신고자료를 마이크로 필름·광디스크·ERP시스템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신고필증의 재교부**

- ① 신고인이나 화주는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 **전자송달**

- ① 수입통관분야에서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납세고지서·환급 통지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보완요구서
 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4. 기타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5절 신고납부



- **징수결정**

신고납부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스템에 심사결재를 등록하는 때에 징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수리전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은행에서 전송한 영수필통지가 통관시스템에 등록된 때 징수 결정된 것으로 본다.

- **관세 등의 납부**

- ①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회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② 납세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한 납부서 번호와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 **징수형태**

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다음의 징수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담보면제)
2. 신고납부(신용·포괄담보)
3. 신고납부(개별담보)
4. 신고납부(신고수리전 납부)
5. 부과고지(담보면제)
6. 부과고지(신용·포괄담보)
7. 부과고지(개별담보)
8. 부과고지(신고수리전 납부)
9. 과세보류
10. 일괄납부(사후정산)
11. 월별납부
12. 수리전반출 일괄고지

● 수정신고

- ①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하 “보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 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납부한 내용을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수정신고내용 등을 기록 날인한다.

● 경정청구 및 경정

-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자는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수입과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심사결과 납부세액이나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와 신고수리전에 신고납부한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 없이 직권으로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품목분류, 세율적용,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등의 결정선례(유권해석 등을 포함한다)를 근거로 정정하는 경우
 2. 물품의 세율, 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
- ⑤ 세관장은 경정하는 때에는 세액경정통지서와 증액된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납부고지서(납부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세액정정 및 보정**

- ① 심사자는 심사결과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인에게 세액정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 ②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세액정정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정정할 부분에 “()”형으로 표시를 한 후 날인하고 그 위에 실제사항을 기재한다.
- ④ 납세의무자는 정정한 내용대로 세액을 정정하여 납부서를 재발행하되 납부서번호와 납부기한은 변경하지 않는다.
- ⑤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 ⑥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보정신청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 ⑦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세관장은 그 내용을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세액보정내역 등을 기록 날인한다.
- ⑧ 납세의무자가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보정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기간과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절 부과고지

● **부과고지 대상물품 및 심사**

세관장은 부과고지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내국세 등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확인**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납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화주가 수입신고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해당 물품
6.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7.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8.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 **납부고지**

- ① 세관장은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국고 수납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절 전자통관심사



- 전자통관심사

① 전자통관심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그 외의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물품 중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체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따로 적용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의 AEO등급별 제외대상을 차등운영할 수 있다.

1. 서류제출대상물품
2. 세관장확인대상물품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통관심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 물품검사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간이통관절차

제1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및 합산과세 기준 등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
|---------------------|----------------------------|--------------------------------|--|
| 농림수 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통관범위 초과인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 | 호두 | 5kg | |
| | 잣 | 1kg | |
| | 소, 돼지고기 | 각 10kg | |
| | 육포 | 5kg | |
| | 수산물 | 각 5kg | |
| | 기타 | 각 5kg | |
| 한약재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 합 300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인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 | 상황버섯 | 300g | |
| | 녹용 | 검역후 150g | |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 남용우려의약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 총6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 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나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안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 의약품 | | 총6병(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 생약 (한약) 제제 | 제조환 | 8g×20병 | |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 | 소염제 | 50T×3병 | |
| | 구심환 | 400T×3병 | |
| | 소갈환 | 30T×3병 | |
| | 활락환, 삼편환 | 10일 | |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일 | |

|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
|------------------|---|----------------------|---|
| 생약 (한약) 제제 |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膏,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青春寶, 強力春寶 등 성분 미상 보신제 | | • 약사법 대상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야생동물 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 • CITES규제대상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ℓ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 | 술 | 200개비 | |
| | 연필 | 50개비 | |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
| | | 필러형 200개비 | |
| | 기타담배 | 기타유형 110g | |
| 향수 | 250g | | |
| 기타 | 향수 | | 60m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 |

• 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 ①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달러 초과인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 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 나. 미화 1,000달러 초과인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 ② 특송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 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
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 등
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한 신고



● 수입신고의 생략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한다.

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
상물품
3.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
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
기관의 보도용품
5.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
6.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 [군함·군용기(전세기를
포함한다)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

- ② B/L만 제시하면 물품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한다. 이때 B/L 원본을 확인
하고 물품인수에 관한 권한있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 ③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방식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만을 검사한다.

- ④ 유해(유골)와 유체의 인도시에는 유족의 신분 등을 파악하여 안보위해
물품이 위장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 ①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중 과세되는 물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이하 “간이신고”)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2. 해당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건품
 3.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 ② 품명과 규격이 각기 다른 소액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등이 면제되거나 합역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요물품명 ○○ 등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제4장 수입신고수리후 확인

•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

-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반입명령인"이라 한다.)은 수입신고수리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② 반입명령인이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명령서를 해당물품의 화주나 수출입신고자(이하 "반입명령수령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반입명령인은 반입명령 수령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청이나 세관의 게시판과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때에는 반입명령수령인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반입할 보세구역

- ① 반입보세구역은 반입명령인이나 반입대상물품의 소재지 지정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해당세관 관할 내에 지정 보세구역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으로 한다.
- ② 해당세관 관할내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세관과 인접한 세관의 관할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 반입기간

- ① 반입명령인은 반입대상물품의 성질, 수량 및 물품소재지와 반입보세구역 간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반입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반입명령수령인이 반입기한내 반입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명령인에게 반입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연장신청을 받은 반입명령인은 그 연장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입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 반입명령수령인의 의무

- ① 반입명령수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운송료, 보관료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반입명령수령인은 반입명령을 받은 해당물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입명령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반입명령대상물품의 조치등

- ① 반입명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물품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명령수령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한다.
 1. 보완-정정후 반출
 2. 반송이나 폐기
- ② 반입명령인이 반송이나 폐기할 것을 명한 경우 반송이나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명령수령인이 부담한다.



제5장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절차

● 목적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이하 "즉시반출제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① 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가.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시 개별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 다.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있는 업체

●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1.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라.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 사업자등록증

●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

- ①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 신청(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승인한다.
- ④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 신청(승인)서에 갱신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반출업체의 지정을 취소한다.

1.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체.
2.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7조까지의 규정과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한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업체. 다만, 체납의 사유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이거나 업무착오인 경우로서 납부기한 경과 7일 이내에 제세를 자진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
5.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포괄담보가 전부 해제된 업체
6. 담보제공 생략이 일시정지 되거나 중지된 업체

● 반출신고의 요건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즉시반출업체와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2. 담보면제한도액이나 담보사용한도액의 잔액(개별담보 제공금액을 포함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정보가 선사(항공사)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제외한다.

● 반출신고

- ①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이하 “반출신고서”라 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2. 송품장(INVOICE) 사본

② 반출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반출신고서 1건으로 한다.

● **반출신고수리**

- ① 세관장은 반출신고 내용의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신고를 수리한다.
- ② 반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반출신고수리인과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서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 **물품반출**

- ① 보세구역운영인은 즉시반출업체가 반출신고수리물품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반출신고의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 ② 즉시반출업체는 입항전 반출신고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부두에서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선신고서의 하선물품구분번호를 'FD(수입신고전물품반출)'로 기재하도록 선사나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난 때에는 반입명령수령인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수입통관 흐름도

**물품반입
(장치장)**

- 외국으로부터 물품도착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창치합니다

**요건구비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 추천서를 수입신고하기 전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전산망 연계기관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세율추천·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신청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신고인)**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통보를 합니다

**신고서처리
(세관)**

- 검사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서류제출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P/L(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과심사를 합니다
- 심사결과 이상없는 건은 결제등록합니다

**담보제공or
사전납부**

- 수입화주는 물품은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사전납부) 담보가 설정된 경우(사후납부)에는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가 됩니다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장치장소) 운영인에서 물품반출 요청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사후납부
(수입화주)**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II | 수출통관

제1장 정식통관절차

제1절 수출신고



- **신고의 시기**

검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인**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 신고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3.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 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③ 수출화주가 직접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D)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체(전년도 수출실적 하위 50% 해당업체 또는 미화 8만 달러 이하 수출 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신고지원센터'의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⑤ 신고인은 전송 또는 제출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구비서류는 사본(FAX, COPY)을 제출 할 수 있다.

●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 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란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이하 '보세구역 등' 이라 한다)
 1. 보세창고(관세법 제183조)
 2. 종합보세구역(관세법 제197조)
 3. 지정보세구역(관세법 제166조)
 4.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를 부여받은 곳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 ②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

| 연번 | 종류 | 품목명 | 대상 |
|----|----------|---------------------|-------------------------------|
| 1 | 중고자동차 | 87류 중 '중고차'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
| 2 | 플라스틱 폐기물 | HS 3915호 (플라스틱 스크랩)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 |
| 3 | 생활폐기물 | HS 3825호 (생활폐기물 등)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생활폐기물 등 |

- ③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 대한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은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 ④ 보세구역 등 반입대상 물품의 수출은 수출신고서에 보세구역 등의 반입정보(컨테이너번호, 장치장소, 반입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보세구역 등 반입대상 물품이 검사로 지정된 경우 수출검사 담당 직원은 다른 물품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2절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 신고서처리방법

- 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통관심사
 2.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
 3. 물품검사
- ② 수출업무담당과장은 결정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정정등록한다.
- ③ 서류제출 없는 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 전송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심사

1. 신고서를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2. 세관장이 수출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
3.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4.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5. 그 밖에 수출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

- ①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고, 수출신고필증에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이 수출신고물품이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수리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시에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분석의뢰

- ① 신고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② 분석대상 시료는 세관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분석의뢰시에는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분석한 물품의 분석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한다.
- ④ 신고수리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전에 분석한다.
 1. 물품의 특성상 수출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계약상이 신고물품인 경우

● 보완요구

- ①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가 기간내에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 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고발의뢰한 경우
4.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제3절 물품검사



● 물품검사

- ① 수출신고물품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만,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세관장은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신고인은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⑤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컨테이너검색기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장명세서 등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세관장은 신고지검사를 완료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하거나 보세운송을 통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도록 할 수 있다.
- ⑧ 세관장은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다.

● 검사대상의 통보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 특정시기를 정하여 신고인, 적하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세관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여부를 수출신고시점에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검사대상의 확인

적하목록 제출자는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때 적하목록상의 수출물품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

- ①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화주는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적하목록 제출자는 확인한 결과 적하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해당 보세구역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 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하여야 한다.



● 검사생략

세관장은 검사대상임을 통보한 수출물품이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고 이를 적하목록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검사장소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1.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 등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2.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검사 입회

-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 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 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검사 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검사입회는 화주나 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이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출화주나 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소속 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방법

-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하여 컨테이너검색기 또는 차량이동형 검색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물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량검사, 발체검사 또는 분석검사 등을 실시한다.

제4절 수출신고의 수리



● 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의 수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신고서 처리방법에 따른다.

1. 자동수리대상은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2. 심사대상은 심사후 수리
3. 검사대상은 검사후 수리. 다만, 적재지검사대상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

● 전자자료의 보관

- ① 신고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수출화주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
 2.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③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관중인 서류와 그 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신고인은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려는 때에는 그 폐기목록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신고인 및 수출화주는 신고자료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 보관할 수 있다.



● 임시개청

- ① 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출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해당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수출신고서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

제5절 수출신고 정정 / 취하 / 각하



● 신고사항의 정정

-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3. 적재예정정보세구역 정정
 4. 적재항부호
 5. 기타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심사대상이나 검사대상을 제외한 수출신고건은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1.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2. 품명·규격 및 세번부호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송품장,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분석결과 회보서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 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
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 등 작성(전송)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7. 그 밖에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신고의 취하

- ①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수출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③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 승인의 통보

세관장은 신청자가 신청한 정정/취하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신청인에게 전산통보 할 수 있다.

● 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직권 정정**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신고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1. 신고내역이 잘못된 경우
2. 분석결과가 수출신고내역과 다른 경우

제6절 특수형태의 수출



- **선상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1.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 : 산물 및 광산물)
2.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 : 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3.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제품자동차

- **현지수출 어패류신고**

어패류를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세판매장 수출신고**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 **외국무역선(기) 신고**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을 매각하여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수령 후 30일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 등 신고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간이통관절차

- **간이수출신고**

검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인**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 신고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3.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 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제3장 수출물품의 적재 이행관리

● 수출물품의 적재

-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 ② 수출자 및 외국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⑤ 세관장은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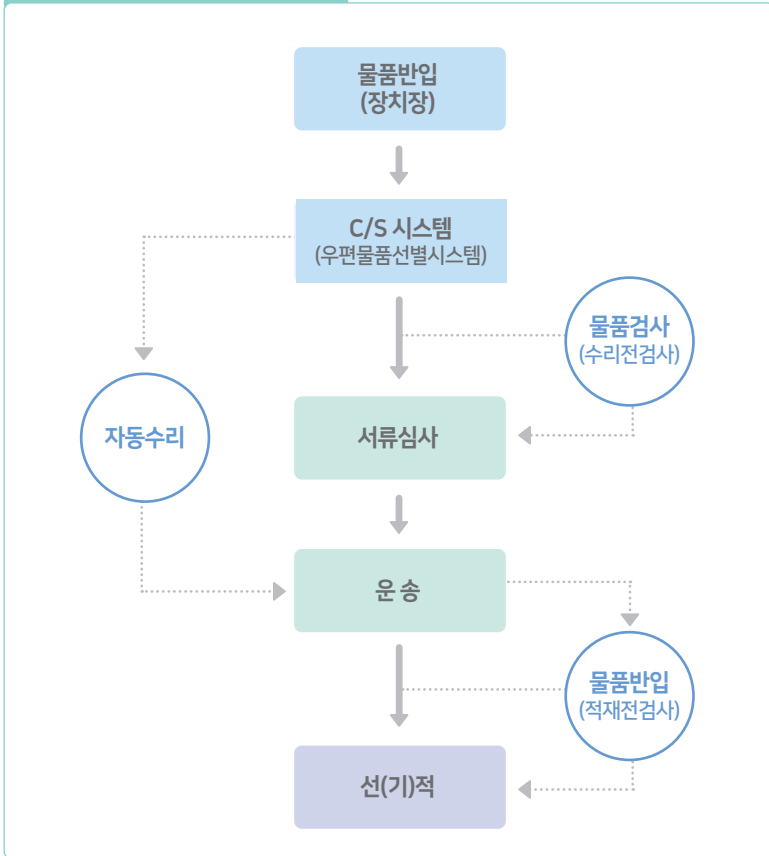
● 휴대탁송물품의 적재 관리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 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우편물품의 적재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통관 흐름도



III | 특송물품통관

제1장 정의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세관장에게 등록된 특급택송 업체가 운송하는 특급택송물품의 수입통관

제2장 특송물품의 통관

● 특송물품의 반입

- ①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러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기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하여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신고구분

- 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목록통관특송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천 달러 이하인 물품(간이신고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물품가격이 미화 2천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 등

-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 ④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와 통보 등

-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특송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할 때
 2.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때
- ② 특송업체는 검사선별된 물품을 세관장이 검사하려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검사요청

- ① 특송업체는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송하인이나 수하인의 주소가 호텔, 사서함과 같이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2. 수입통관고시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3.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
 4. 은닉포장 등 특송물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5. 마약·총기류·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 **우범화물 선별검사**

- ①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하여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2. 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수리 등**

- ①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세관장의 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통관한다.
- ② 세관장은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심사가 종료한 후에 수리한다.
- ③ 세관장은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고시에 따라 수리한다.

- **스마트통관**

- ① 스마트 통관은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2천 달러 이하 면서 개인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 등과 같이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② 신고내용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 및 수리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신고수리전 신고내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 ① 수하인은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 ②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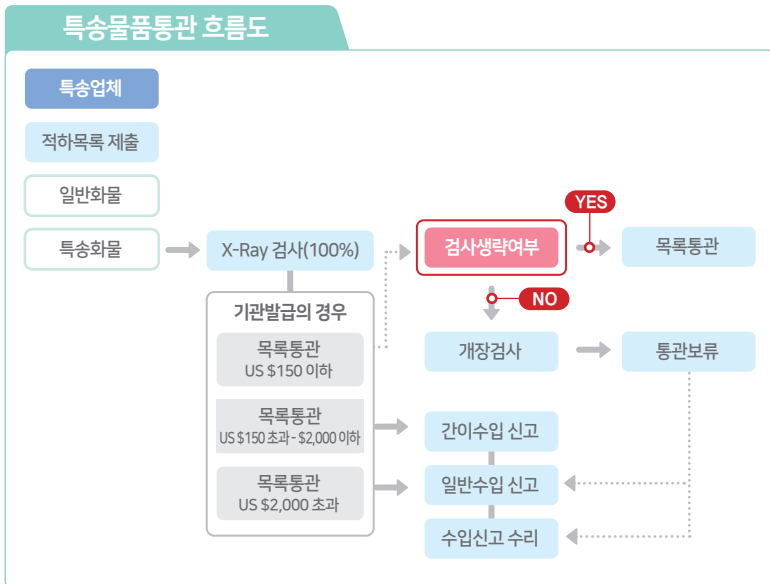
● 배송지정보 확인

세관장은 제출된 배송지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1. 특송업체의 실제 배송지정보와 최초 세관에 제출한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서를 비교하여 배송지정보가 누락되었는지
2. 제출된 배송지정보가 허위제출 되었는지

● 사후심사

-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수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V | 우편물통관

제1장 개관

● 용어정의

- ① “현장면세”란 X-ray 검색기에 의한 검사, 현품검사결과 등을 통해 면세 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가격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면세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현장과세”란 X-ray검사, 현품검사 결과 세액산출에 곤란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가격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과세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심사대상 우편물”이란 X-Ray검사, 현품검사결과 과세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 등을 제출받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 통관우체국

- ① 국제우편물류센터
- ② 부산국제우체국
- ③ 인천해상교환국

● 통관지세관

- ① 항공으로 반입된 국제우편물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② 해상으로 반입된 국제우편물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 ③ 인천항으로 반입된 해상우편물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통관한다.



제2장 우편물 목록제출 및 우편물 검사

● 우편물목록 제출

- ①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목록은 해당 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우편물의 검사

- ①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우편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서신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X-ray검색기를 통해 실시하되, X-Ray 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X-Ray 검사결과 사회안전 저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등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우편물 관리

- ① 세관장은 검사결과 사회안전, 국민보건 등을 위하여 통관관리가 필요한 물품은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스티커를 겹포장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고 물품통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통관을 보류한 물품 및 관리대상물품의 통관관리를 위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해당물품을 지정보세구역 등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우편물 통관

● 현장면세

- ① 통세관장은 검사결과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면세처리할 수 있다.
 1. 면세대상 소액물품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3.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4.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
5. 그 밖에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

● 현장과세

- ① 세관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에 대하여는 우편물신고서 또는 송품장 등을 기초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2.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3. 세액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
- ② 세관장은 과세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하 "통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세액을 입력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통관우체국장은 세관장이 통보한 세액을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관세 등은 세관장 세입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현장과세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취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국제우편물 현장과세 안내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통지되도록 한다.
- ⑤ 세관장은 현장과세한 물품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기본세율 등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다.
- ⑥ 통관우체국장은 과세처분을 취소한 물품이 통관우체국으로 다시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심사대상물품

- ① 세관장은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에서 제외된 물품은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 통관처리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통관우체국장은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된 물품의 우편물목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세액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수입허가서나 추천서 등 수취인이 보완해야 할 통관시 구비서류와 서류의 제출방법, 일반수입신고 대상 여부,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 ⑤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전분류신청

- ① 수취인 또는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우편물 번호 등 우편물 정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되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된 우편물을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② 사전분류신청은 우편물 겹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에 한한다.

제4장 심사대상물품의 신고 및 수리

●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 ①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우편물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 ②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취인은 모바일, 인터넷, 전자우편,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통관시스템에 감면조항 등 근거를 입력한다.
- ④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 면제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①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수입신고 대상물품
 1.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2.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또는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3. 그 밖에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 ③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은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한다.
- ④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해당 물품이 일반통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겹포장에 수입 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신고의 시기

- ①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통관우체국에 도착 전 또는 도착 후에 할 수 있다.
- ② 도착전 신고는 신고대상물품이 통관지세관 관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의 겹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 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에 한한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도착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 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 ① 신고인은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구분 : 도착 전 신고 또는 도착 후 신고
 2. 우편물번호
 3. 배송방법 : 우체국배송 또는 수취인 방문인수

- ② 세관장은 우편물이 도착 전 신고된 때에는 해당 우편물번호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통관우체국장은 도착 전 신고물품이 반입되면 해당 물품을 세관장에게 인계하고,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도착 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이 제출한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과 수입신고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수리하고,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종료한 후에 수리한다.
- ⑤ 세관장은 신고수리를 한 경우 우편물 번호 등 신고수리 내역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물품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세관장은 도착 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신고일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까지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심사대상 우편물 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신고의 각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면세된 물품의 재반입에 따른 수입신고

- ①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일반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취인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 ②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취인은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재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또는 세관서류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동일물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재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세운송 및 반송 등

• 보세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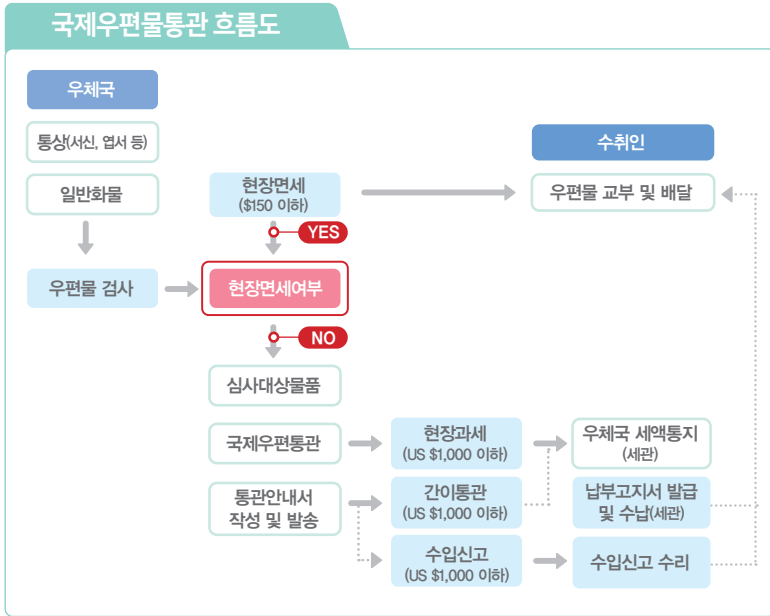
- ① 보세공장 등의 운영업체가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하려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보세구역으로 기재된 경우 수취인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이 보세운송 신고를 수리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동 내역을 등록하고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 통관우체국장이 보세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거나 승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의 주소까지 보세운송 할 수 있다.

• 우편물 반송

- ① 통관우체국장은 보관기일 경과, 수취인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하려는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반송우편물 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반송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반송의 경우에 세관장이 반송할 물품을 구분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인계한다.
- ②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장이 반송을 신청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우체국직원의 입회하에 해당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관세범칙 혐의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보류하고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반송을 승인한 경우 반송 우편물 목록 1부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반송 승인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품 관리

- ① 통관우체국장은 부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그 목록을 세관장에게 통보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통보받은 우편물의 폐기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V | 여행자 휴대품통관

제1장 총칙

• 용어정의

- ①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 ②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미검수하물)을 말한다.
- ③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및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 ④ “신변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변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⑤ “신변장식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체의 일부부에 착용하여 장식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

①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 ③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반입하는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수리용 물품·견본품 및 원부자재 등은 여행자 휴대품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여행자휴대품의 간이한 현장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휴대반입물품신고

제1절 신고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2. 일행 중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하여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

3.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국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작성

1. 이름
2. 생년월일
3. 여권번호(외국인에 한함)
4. 직업
5. 동반가족수
6. 입국일자
7. 항공기편명 또는 선박명
8. 여행목적
9. 여행기간
10. 한국 입국전 방문한 국가
11. 한국내 주소(전화번호를 포함한다)

● 신고대상물품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2.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 (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앵속·아편·코카인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8.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9.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11.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 세관통로의 구분 운영

세관장은 세관통로를 면세통로, 세관검사통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조사

세관장은 여행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 검사선별 라인(Customs Belt)을 통과한 경우
2. 신고사항을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숨긴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절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 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국시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물품 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여행사 소속의 해외여행 인솔자
 2.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여행자의 인솔자

● 통관편의 제공

- ① 세관장은 단체여행자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를 운영한다.
- ② 세관장은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생략한다.

● 세관과 여행업계간 상호 협력

세관장과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이용하려는 여행사 또는 여행사가 소속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 단체여행자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테러관련물품, 마약, 밀수품 등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1. 단체여행자의 통관편의 증진을 위하여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제출과 휴대품통관제도의 홍보에 적극 협조
2. 해외에서 불법 조장행위, 사치품 구매나 탈세 조장 행위 금지 등 관세법령 준수를 위한 해외여행인솔자 교육 및 복무관리



3. 외국의 여행자통관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4.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또는 정보제공

제3절 크루즈여행자 선상일괄신고



●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 ① 크루즈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탑승 여행자들을 대표하여 1명이 일괄하여 선상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입항일자, 입국여행자 수 등 일반사항과 신고대상물품 소지자 현황(신고대상물품 소지자의 인적 사항 및 그 물품내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일괄신고대상 크루즈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별도의 신고를 생략하고 국내입항시 제출된 승객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 통관편의 제공 등

- ① 세관공무원은 크루즈여행자 선상일괄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선박에 직접 출무하여 신고대상물품 확인 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크루즈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생략한다.
- ② 휴대품 검사결과 이상물품이 확인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상에서 개장검사를 실시하거나 세관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입국여행자 휴대품통관

제1절 통관심사



● 신고내역과 현품확인

- ① 세관장은 여행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해외 카드 사용내역,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를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현품확인 전에 X-ray검색기에 의한 간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수하물에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현품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곧바로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검사결과 신고사항과 다른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통고 처분, 고발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요건의 심사

- 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총포, 도검(장식용 도검과 일본도를 포함한다), 화약류 등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편, 대마초, 마약 등



3.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돼지고기·햄·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한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의 세관장확인대상물품
- ② 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과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 등 통관제한

● 유치·예치 등

- ①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한다.
1.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수입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이거나, 수입제한물품으로 수입에 관하여 허가·승인·표시 그 밖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물품
 2. 그 밖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
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
 2. 국내반입을 목적으로 한 상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 ③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 ④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장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⑥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한다. 다만,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면세통관



●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 ①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기본면세 범위)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수산물(한약재 포함)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
- ②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류
 2. 담배

| 담배종류 | | 수량 |
|---------|-------|------------|
| 꺾 렬 | | 200개비 |
| 엽꺾 렬 | | 50개 |
| 전자담배 | 꺾 렬형 | 200개비 |
| | 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ml) |
| | 기타유형 |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 | | 250그램 |

3. 향수
4. 상용물품
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 면세범위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 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1.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
2. 다음 각 목의 물품(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 가. 주류: 1ℓ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1병
 - 나. 담배: 1200개비(1보루)
 - 다. 향수: 60밀리리터(ml)
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4.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5. 비거주자가 현재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폰,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인용 휠체어

●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①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

1. 농림축수산물

| 품 목 | 면세통관범위 | 품 목 | 면세통관범위 |
|---------|--------|-----------------|---------|
| 참기름 | 5kg | 잣 | 1kg |
| 참깨 | 5kg | 쇠고기 | 10kg |
| 꿀 | 5kg | 돼지고기 | 10kg |
| 고사리, 더덕 | 5kg | 그 밖의 농림축 수산물 | 품목당 5kg |

2. 한약재

| 품 목 | 면세통관범위 |
|---------------------|---------|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 300kg |
| 녹용 | 150kg |
| 그 밖의 한약재 | 품목당 3kg |

②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품목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 한약의 면세범위

다음 표에 따르되,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하이며, 10개 품목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품 명 | 규 격 | 단 위 | 면세통관기준 |
|-------|-------|-----|--------|
| 모발재생제 | 100ml | 병 | 2 |
| 제조환 | 8g | 병 | 20 |
| 녹용복용액 | 12앰플 | 갑 | 3 |
| 활락환 | | 알 | 10 |
| 다편환 | 10T人 | 갑 | 3 |
| 소염제 | 50T人 | 병 | 3 |
| 구심환 | 40T人 | 병 | 3 |
| 소갈환 | 30T人 | 병 | 3 |
| 인삼봉황 | 10T人 | 갑 | 3 |
| 삼편환 | | 알 | 10 |
| 백봉환 | | 알 | 30 |

그 밖의 환약

CITES 등 관계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제3절 과세통관



-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 ①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과세한다. 다만, 녹용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포함하여 총 500g에 한정하여 통관할 수 있다.
- ② 여행자휴대품 중 모시와 삼베는 면세하지 아니하고 각 3필(규격 : 50cm × 6m)에 한정하여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본다.

- **신고금액 인정**

자신 신고한 여행자가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 **세액의 계**

- ①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6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② 신고한 금액에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주류 및 향수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우선 공제한다.

- **단일간이세율 적용**

- ① 세액의 계산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여행자 1명당 과세 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 20%를 적용한다. 다만,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은 제외한다.
- ② 여행자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산 총액이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물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하되,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하며, 물품 1개 또는 1세트가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가격 중 기본면세 범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 여행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 ① 세액의 계산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 ②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반송

● 반송신청

- ①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을 반송하려는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치증 또는 예치증
 2. 신분증
 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반송위임장
 5.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6. 피위임자 여권(사본)

● 반송방법

1. 기(선)내 휴대반송 : 반송자가 반송물품을 기(선)내에 직접 휴대하여 반송하는 방법
2. 기탁반송 : 반송사유 및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부피 등을 고려하여 기(선)내 휴대반송이 부적당하여 기탁수하물로 반송하는 방법
3. B/L반송 :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반송을 의뢰하고, 선(항공)사에서는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는 AWB)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

4. EMS반송 : 여행자가 세관에 반송을 의뢰하고,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하는 방법

제5장 출국시 세관절차

● 휴대물품 반출신고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가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4조의1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3.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4.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5. 해외 수출상당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확인

- ①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는 출국지세관장에게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시 신고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에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출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의 반출 확인

외국인관광객 등이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액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반출신고**

수출신고수리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세금의 사후납부

- **대상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 납부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체납자
2. 우범여행자
3. 만 19세 미만인 사람
4.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세금사후납부의 신청**

관세 등을 사후 납부하려는 여행자는 전화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체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통관

- **대상 여행자이 범위 및 물품**

①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만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

- ①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여행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하여 담보제공 후 반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재반출 면세기간

- ①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발급 시 재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 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반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 연장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세관장은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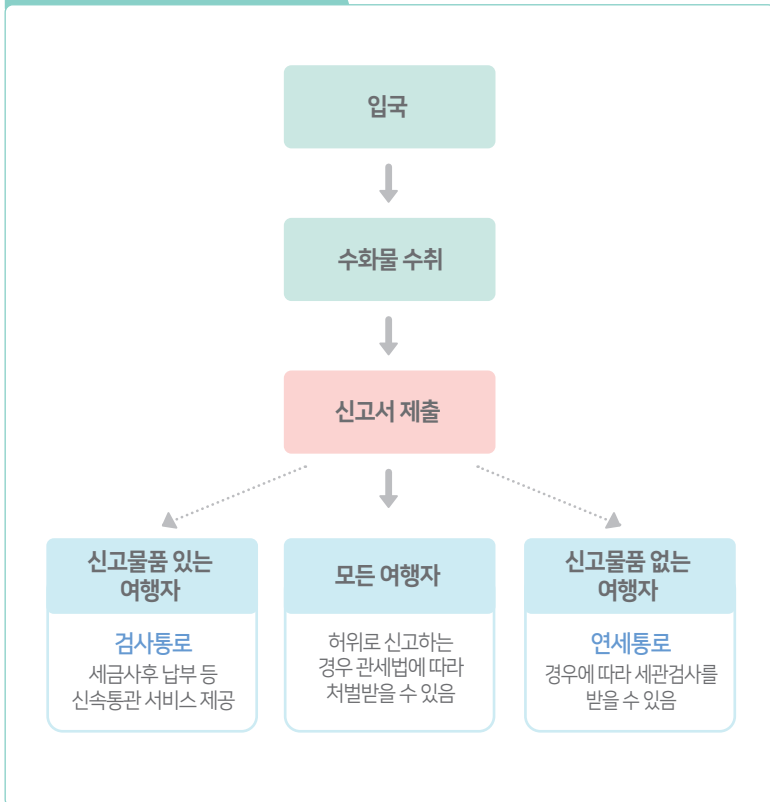
●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 ①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반출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반입물품의 반출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일시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예치하는 경우
2. 일시반입한 물품의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예탁하는 경우
3. 일시반입한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세관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간내 반출 및 미반출시 제세납부를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보증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통관 흐름도



VI | 이사회물 통관

제1장 총칙

- **목적**

신속한 이사회물의 수입통관으로 세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정의**

1. “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자를 말한다.

2. “단기체류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3.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내구성 가정용품”이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한다.

5.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 **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은 산입한다.

- ② 기간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일자까지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기간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이사자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화물통관

• 이사물품 인정범위

- 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을 인정수량]

| 품 목 | 면세통관범위 |
|--------|--------|
| 1 - 2명 | 1개 |
| 3 - 4명 | 2개 |
| 5 - 6명 | 3개 |
| 9명 이상 | 4개 |

- ③ 거주기간의 확인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우리나라 국민은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을 통하여 출입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자등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로 확인
 2. 재외영주권자는 취업을 위한 입국시 고용계약서, 영구귀국을 위한 입국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 등으로 확인
 3.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인 때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
- ④ 세관장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2. 파산
3. 입국거부, 출국명령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사물품 반입기간

①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경우 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 과세대상물품

①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사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②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③ 자동차 통관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나. 이사자(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을 적용한다.

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을 포함)부터 등록명義인의 입국일까지의 기간

나.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義인보다 늦게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한 때에는 그 입국일

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 과세가격의 결정

- ①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사물품등)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 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3월 미만인 인우 : 신품가격의 80%

2. 사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60%



- 3. 사용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40%
- 4.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신품가격의 20%

②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① 이사물품등은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의 자가 작성할 수 있다.

1.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사자등)
2.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3.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

②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5. 거주기간 확인 서류
6. 자동차 관련 서류
7.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한다.

1. 필수 과세대상물품
2. 자동차, 업종 등 통관 후 국내에서 등록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 물품

3. 신고자가 사후증명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자 하는 물품

● 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 ① 단기체류자의 거주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 면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등 필수 과세대상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세금납부

-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있는 자
 3.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세관장이 이사자등의 직업, 국내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이사자등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가산세 징수

이사자등이 과세대상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 ① 세관장은 이사물품등의 통관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이사자등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나.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다.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라. 가족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 마. 요건면제 비대상〔통합공고〕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요건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기재사항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운송업자가 이사물품등과 제3자의 물품이나 상용물품을 혼적하거나 은닉하여 운송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의 수량, 포장방법,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통고처분, 부과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에 따라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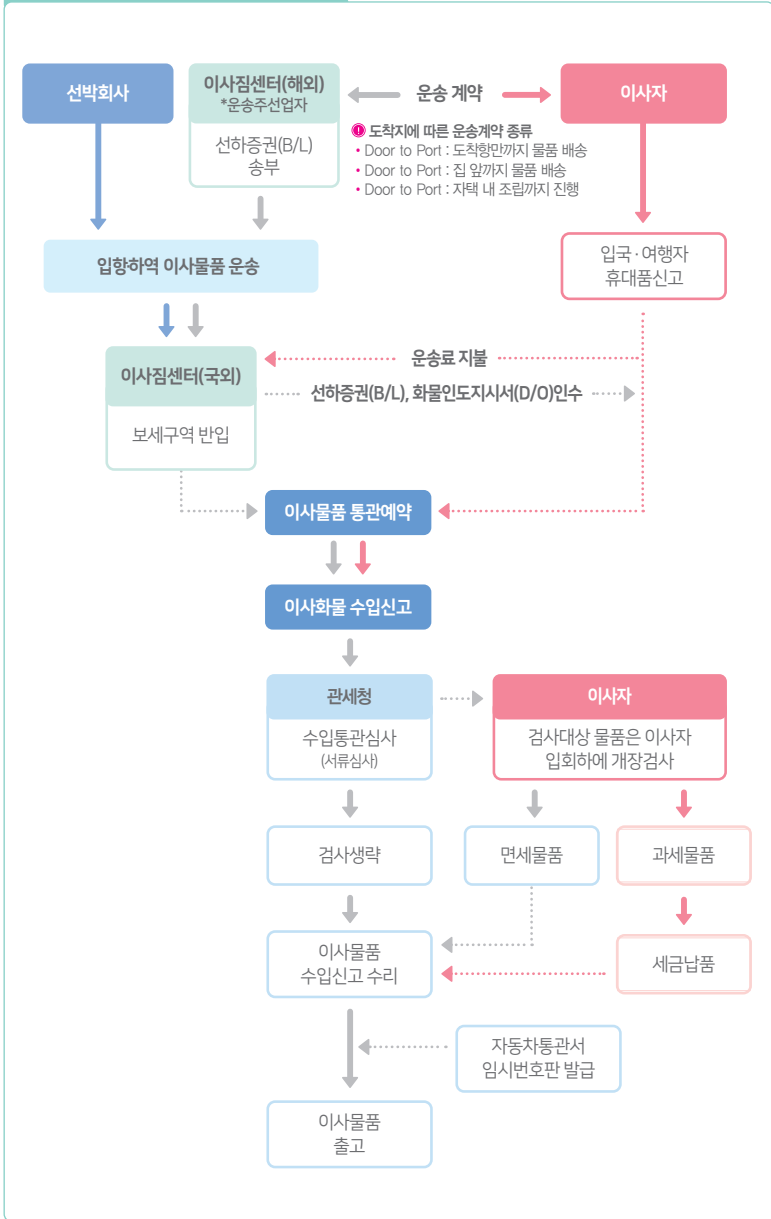
● **이사물품 통관지세관**

이사물품등은 도착한 항만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다.

1. 서울세관
2. 인천세관
3. 북부산세관
4. 대전세관



이사회물통관 흐름도



VII | 출·입국 외환신고

● 출국시 외환신고

-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 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다.
- ②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 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다.
- ③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①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 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 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 ②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금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 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다.(예 :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 에게 신고)



●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 구분 | | 국민인 거주자 | 비거주자등 | |
|------------------------------------|---|---|--|-------------------|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 모두 합하여 미화 1만 달러 상당 이하 | 자유 | 자유 | |
| | 미화 1만 달러 초과 |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 외국외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 해당사항 없음 |
| | | 일본해외여행자의 일본해외여행경비 | 관할세관장에서 신고 | 해당사항 없음 |
| | |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 수단 |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외국인 거주자 포함) | 신고 불요 (신고증 필요) |
| | |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 | 해당사항 없음 | 신고 불요 (신고증 필요) |
|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 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 신고 | | |

● 관련규정

- ①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②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입국시 외환신고

- ① 미화 1만 달러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다.
- ②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다.
- ③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달러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신고 하여야 한다.

● 신고절차

- ①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환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한다.
 - ②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1부를 수령하여야 한다.
 - ③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하다.
- ※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 T1공항휴대품1과 |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 032-723-5119

● 관련규정

- ①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②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벌칙

- ①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관세법 제32조)을 하고,
- ② 미화 3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 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함.

VIII 보세공장제도

제1장 정의

● 보세공장이란?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용어정의

- ① “물품도착전 사용신고”란 운영인이 보세공장의 작업공정상 물품도착과 동시에 보세작업에 사용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의 유희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장외작업”이란 해당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잉여물품”이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한다.
- ⑤ “자율관리보세공장”이란 세관장이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한 보세공장을 말한다.

제2장 설치·운영의 특허

● 특허대상

- ①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분해·검사(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포함한다)·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 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

● 특허요건

- ① (시설요건) 보세공장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공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그 밖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보세공장관리 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제조·가공 그 밖의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의 비치
 2. 물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의 비치
 3. 원재료, 제품, 잉여물품,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는 물품 및 기타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야적장과 필요한 작업장의 확보
 4. 소방법령 및 소방관서가 지정하는 방화 및 소방시설의 구비
 5.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시설의 구비

6.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완비하거나 보안전문 업체와 경비위탁계약서를 구비
 7.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공장의 경우는 위험물취급요령 및 그 밖의 법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방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기타)에서 정한 시설의 완비 및 취급자격자의 상근과 위험물품 보세공장 특허지역으로서의 적합한 지역
- ② (관리요건) 보세공장은 보세화물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세화물 관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원자재의 반출입, 제품 제조·가공, 제품 반출 및 잉여물품의 처리 등과 관련한 물품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물품관리를 위한 시스템(기업자원 관리(ERP) 시스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원자재 등의 부정유출 우려가 없으며, 보세작업의 감사·감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신청 전의 특허기간 동안 해당 보세공장의 법규수행능력평가 평균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물품관리를 위하여 운영인은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에 따라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물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료보존매체에 따라 보관·관리하려는 운영인은 자료보존매체를 확인,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설치운영의 특허

- ①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보세공장설치·운영 특허장을 받아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으로 한정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인적사항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서

나.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운영인·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다. 국세납세증명

라. 법인등기부 등본

② 세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허대상, 특허요건(시설요건, 관리요건) 및 특허제한 사유 등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세공장으로 특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신규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 신청업체가 물품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관리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설치·운영특허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조·가공 등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 보세공장 외에서 일부의 작업(장외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보세작업의 원재료의 손모음이 안정되어 있어 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보세공장을 특허(갱신 포함) 하려는 때에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특허신청인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특허제한 사유
2. 보세공장 특허대상,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요건과 관리요건 등 충족여부
3. 단일보세공장의 적정 여부
4. 기장의무 준수가능성과 화물관리능력 등
5. 보세공장 주요 제도개선사항

● 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

① 2개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간에 물품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때에는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1.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
2. 기존 보세공장으로부터 10Km 기준거리 이내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은 세관감시의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준거리의 1/2범위 내에서 그 거리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 특허의 제한

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의 설치·운영 특허를 할 수 없다.

1. 운영인의 결격사유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3.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3. 손모율이 불안정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4. 보세작업의 전부를 장외작업에 의존할 경우

● 특허기간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의 특허기간은 임차계약기간으로 한다.

● 특허의 갱신

①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세공장설치·운영 특허(갱신)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으로 한정한다)
3.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4.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인적 사항(중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의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요건 및 특허의 제한 사유에 대한 심사는 설치·운영특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특허받은 업체가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허의 상실 및 승계

① 세관장은 특허가 상실된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특허의 효력상실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보세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3.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으로 한정한다)
 5.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6.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보세공장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은 피승계 보세공장 특허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반출입 절차

• 반입대상 물품

- ①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보세공장 원재료)는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 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2.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 거절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
 3. 해당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물품
 4. 해당 보세공장에서 건조·수리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 제외)
 5. 해당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부착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 후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
 6.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시험용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7.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과 세트를 구성하거나 함께 거래되는 물품
 8.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
 9.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
 10.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 유지보수 또는 수리 등을 위해 추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이 필요한 물품
 11.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
- ④ 세관장은 운영인이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원료과세

- ①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 적용 신청(승인)서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보세공장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3. 내·외국 원재료별 품명, 규격, 소요량, 재고 등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록·관리되는 경우
- ③ 운영인이 원료과세 적용 신청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원료과세 포괄적용 정정신청(승인)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정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할 때 해당 원산지과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 세율란(FTA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 신고를 할 때 협정관세적용 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물품의 반출입

- ①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신고(승인)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인지를 심사하여 반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입되는 물품은 즉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신고는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환급대상물품의 반입신고는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의 기록으로 갈음하며, 국내 반출신고는 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 대상이 아닌 물품의 반출신고는 수입 등의 절차에 따른다.
- ④ 운영인은 잉여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 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는 물품의 반출신고는 동 신고의 수리로 같음하며,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이상(계약내용과 상이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물품이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운영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 원재료와 부산물 등 잉여물품을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1. 비축·보관·판매를 위하여 다른 보세구역 또는 동일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2.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3. 불량,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다른 보세공장에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원재료 공급 보세공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

● 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 ① 다음의 물품은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제조·가공공정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2.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 등 추가적인 제조·가공·수리에 필요한 원재료
 3.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그 밖에 유사한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
 4. 생산중단, 제조품목의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
 5. 계약내용과 다른 원재료(다만, 사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보세 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1. 동일법인이 2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설치·운영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일부 보세공장의 원재료 수급 및 재고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법인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제품의 사양 변경, 단종 또는 재고 원재료 중 해당 보세공장의 제조·가공에 지장이 없는 원재료에 대하여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보세공장 등에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 원재료에 대한 성분 분석, 보세공장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용 원재료의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공장에 반입신고 또는 사용신고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 계약내용 상이 물품의 반입

① 보세공장에서부터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승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명서류
3.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반입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②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제출서류 및 물품검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지 여부
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지 여부
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는지 여부

③ 반입신고를 승인하는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보세공장 반입승인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물품반입의 정비 및 과징금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고조사결과 자용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6.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물품의 장치 및 관리

① 운영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반입대상물품으로서 해당 사용장소에 장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1. 보세가공용 원재료 등(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물품 포함)
2.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외국물품
3.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수리된 물품
4. 보세작업결과 발생한 잉여물품
5. 내국작업 물품

②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한 경우 주공장 관할지세관(특허세관)장은 공장 및 공정별로 구분하여 보세공장을 관리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감시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운영 실태 등의 업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등

① 운영인은 사용신고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중 거대 중량(부피)의 물품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장치(장외일시장치)할 수 있다.



- ②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신청 물품이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 밖의 장치기간·장소 및 신청사유 등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치장소를 변경 하거나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장외일시장치 물품은 장외일시장치 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 양수도 또는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④ 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을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신고 및 보세 운송신고는 장외일시장치허가서로 같음한다.
- ⑤ 장외일시장치장소에 반입된 물품은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신고(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허가 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장외일시장치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받은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 사용신고 및 검사

-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2. 수입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3. 송품장
 4.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5. 세관장 확인서류(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포장명세서, 보수작업신청서, 내·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서, 위탁가공계약서 등)
- ②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식물방역법」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수산생물질병관리법」
6. 「가축전염병예방법」
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 한정)
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0. 「통신비밀보호법」
11.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12. 「방위사업법」
13. 국민건강보호·사회안전을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여 법률상 수입요건 구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

③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보세공장이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입항전에 사용신고를 하게 하거나 사용신고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신고 취하 등

-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할 물품을 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사용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장에게 사용신고 취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사용신고 취하신청을 받은 때 해당 물품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사용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사용신고 된 물품이 제조공정 등에 투입되어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운영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지하여야 한다.



●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 ① 세관장은 운영인이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보세공장 도착전에 심사 및 결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 도착보고 된 때에 전산에서 자동수리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결재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 ①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혼용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요원재료목록 제출로 상세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운영인은 작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내·외국물품 혼용비율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세관장은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을 받은 물품과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음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④ 장외작업 또는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허가를 받아 생산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신청은 허가받은 운영인이 원보세공장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운영인이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장외작업

- ① 장외작업을 하려는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장외작업 장소를 등록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부정하게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는 장외작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가공계약서 등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제출생략)

② 장외작업허가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내에서 장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 1년

2.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인 경우 : 2년

③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 기간 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장외작업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제조공정상 동일한 장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2.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④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장외작업 기간연장(장소변경) 승인신청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

1. 거대중량 또는 원보세공장의 장치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장치하려는 경우

2.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3.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외작업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⑤ 운영인은 원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 또는 장외작업장과 장외작업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을 이동할 때에 물품 반출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유지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의 이동은 보세운송절차에 따른다.



- ⑥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아 보세작업한 물품과 그 잉여물품은 장외작업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으로 수출·수입신고, 양수도(동일 법인의 보세공장간 이동을 포함한다)·폐기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검사대상물품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은 장외작업 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운영인은 허가받은 장외작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허가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외작업허가 내용을 정정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에 따라 잦은 제작(설계) 변경 등으로 허가내용을 수시로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료 보고 전에 사용된 원재료 실소요량으로 일괄하여 1건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운영인은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장소 또는 동일계약에 따른 여러 건의 장외작업허가를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 할 수 있다.
- ⑨ 장외작업 허가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장외작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 ⑩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소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에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 ⑪ 장외작업 물품의 관리·감독을 의뢰받은 세관장은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과정에서 보세화물의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장외작업허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⑫ 운영인은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원재료 및 제품의 운송 시에는 보세운송등록 차량, 원보세공장 또는 장외작업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

- ① 장외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장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인은 장외작업 신청 시 해당 품목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장외작업허가의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의 고무인을 날인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보세운송신고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외작업허가서 사본
 2. 적하목록 또는 B/L(AWB 포함) 사본
 3. 송품장 사본
- ③ 운영인은 장외작업장에 원재료가 직접 반입된 때에는 반입신고, 사용신고 등은 보세공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 보수작업

- ① 물품의 보수작업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한하며, HS상 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표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등)
- ②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즉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물품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이 승인된 것으로 같다.
- ③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료보고와 동시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보수작업완료물품임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보수작업완료보고를 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수출후 재반입된 물품이 보수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잉여물품으로 처리하고 대체품을 수출할 수 있다.

● 내국작업

-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조업상태 및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내국 작업 허가기간 중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취소, 허가내용 변경, 기간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을 할 수 있다.
- ④ 허가받은 내국작업 원재료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의 반입신고는 내국작업 허가서로 같음하며, 이 경우 내국작업으로 제조·가공하여 생산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된다.
- ⑤ 운영인은 내국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를 하고 내국작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물품과 잉여물품을 지체 없이 보세공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신고는 내국작업종료신고로 같음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보세화물과 구분장치에 필요한 충분한 장치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장에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 ⑥ 내국작업 일괄 허가를 받은 경우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내국작업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의 일부를 보세공장 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 반출하려는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내국작업이 끝난 때에는 해당 반출기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출·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운영인이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양수한 자가 수출, 수입하려는 경우(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의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국내업자가 수출, 수입하는 경우 포함)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휴대탁송물품 등의 적재이행관리**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휴대 또는 우편 등에 의해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재이행관리 등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관리에 따른다.

- **견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

세관장은 운영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세공장에서 전시장, 본·지사의 지정장소, 품질검사업체 등의 장소(전시장 등)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1. 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시험용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원재료 소요량 관리**

운영인은 보세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각각의 원재료의 총량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에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 보관(전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동질물품으로서 손모음의 차이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음을 산정할 수 있다.

1. 제품의 품명, 모델·규격, 수량
2. 원재료의 품명, 모델·규격, 내·외국물품의 구분
3. 원재료별 실소요량
4. 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별 평균 소요량



- **잉여물품의 처리**

운영인은 잉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의 형태, 품명·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및 발생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잉여물품을 다른 보세작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귀금속류 등) 보세공장 관리

- **귀금속류 보세공장**

① 귀금속 및 보석류 보세공장(귀금속류 보세공장) 특허 및 운영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1. 설치·운영특허 : 물품검사를 위한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 비치, 원재료와 제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금고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장치 및 관리 :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창고 또는 금고에 세관봉인을 할 수 있다.
 3. 물품의 반출입검사 :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자체 검사대상선별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실업체로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감사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운영인은 원석 등의 절단 작업장과 일반작업장을 분리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 세관장은 원재료·제품의 반출입 및 관리방법, 보세작업신고, 보세작업완료 보고 등 귀금속류보세공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② 귀금속류 보세공장의 소요량관리는 보세작업기간총소요량으로 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외국물품혼용작업승인 : 매 건별로 혼용작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종료시마다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은 보세작업을 종료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내식 보세공장

- ① 기내식 보세공장의 특허 및 운영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1. 물품의 장치 및 관리 :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세관봉인과 물품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2.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세관장은 기내식 보세공장 특성을 감안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자체내규를 정하여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할 수 있다.
- ② 기내식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기내식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기내식 적재(하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거나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등 보세공장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 적재(하기)허가를 당일 적재 예정인 항공기 전체에 대하여 포괄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운영인은 포괄허가 받은 내역이 실제 적재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적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내식 적재허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영인은 기내식 적재신청-허가를 득하고 적재 또는 제공한 후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 서명을 받은 적재허가서를 수출신고필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FTA형 특별보세공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FTA형 특별보세 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내부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자
2. 해당 업체 연간 수출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FTA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예정인 자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세공장의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수출액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의 "수출실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5장 자율관리보세공장

-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

- ①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5조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자
 2. 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공장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한 자
 3.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입신고금액중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수출신고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자(보세공장에서 사용신고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동일법인인 다른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되어 추가 공정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와 「수출용원

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실적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 보세공장은 기존 자율관리 보세공장에서 증설된 경우로서 제조·가공 공정이 동일한 경우 기존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수출입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4. 반출입, 제조·가공, 재고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 ② 자율관리보세공장을 지정 신청하려는 자는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하고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의 적정 여부와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사항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장외직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을 포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 사용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할 수 있다.
 2.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장소가 자율관리보세공장인 경우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물품의 반출입을 할때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반입확인대상물품을 공휴일 또는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긴급히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보세사가 사용 물품의 반입명세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반입확인서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자율관리보세공장은 특례사항에 대한 업무절차 매뉴얼과 물품의 반출입 등 이동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FTA



I | FTA 일반현황

제1장 자유무역협정(FTA)이란?

• 정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른다.



● 주요내용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확산이유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은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숫자(176개)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크게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WTO다자협상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제2장 FTA체결현황

● 발효된 FTA | 16건, 56국

※ 2020년 02월 기준

| 상대국 | 추천현황 | | | 의의 |
|---|-----------|--------------------|------------------------|----------------------|
| | 협상개시 | 서명 | 발효 | |
|  칠레 | 1999년 12월 | 2003년 2월 | 2004. 4. 1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
|  싱가포르 | 2004년 1월 | 2005년 8월 | 2006. 3. 2 |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
|  EFTA (4개국) | 2005년 1월 | 2005년 12월 | 2006. 9. 1 | 유럽시장의 교두보 |
|  아세안 (10개국) | 2005년 2월 | 2006년 8월 (상품협정) | 2007. 6. 1 (국가별 상이) | 제2의 교역대상 |
|  인도 | 2006년 3월 | 2009년 8월 | 2010. 11 | BRICs 국가, 거대시장 |
|  EU (28개국) | 2007년 5월 | 2010년 10월 | 2011. 7. 1 | 세계 최대 경제권 |
|  페루 | 2009년 3월 | 2011년 3월 | 2011. 8. 1 | 지원부국,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
|  미국 | 2006년 6월 | 2007년 6월 | 2012. 3. 15 | 거대 신전 경제권 |
|  터키 | 2010년 4월 | 2012년 8월 | 2013. 5. 1 |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
|  호주 | 2009년 5월 | 2014년 4월 | 2014. 12. 12 | 지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용시장 |
|  캐나다 | 2005년 7월 | 2014년 9월 | 2015. 1. 1 | 북미선진시장 |
|  중국 | 2012년 5월 | 2015년 6월 | 2015. 12. 20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
|  뉴질랜드 | 2009년 6월 | 2015년 3월 | 2015. 12. 20 | 오세아니아 주용시장 |
|  베트남 | 2012년 9월 | 2015년 5월 | 2015. 12. 20 | 우리의 제4위 투자국 |
|  콜롬비아 | 2009년 12월 | 2013년 2월 | 2016. 7. 15 | 지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  중미(4개국) | 2015년 6월 | 2018년 2월 | 2019. 10. 1 |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중미: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미발효)

● 타결된 FTA | 4건, 4국

※ 2020년 02월 기준

| 상대국 | 추진현황 | | 의의 |
|---|-----------|---------------------------------|----------------------------|
| | 협상개시 | 진행상황 | |
|  중미(1개국) | 2010년 10월 | 한-중미 FTA 실질타결 선언 (2016년 11월) | 신시장 창출 |
|  영국 | 2016년 12월 | 한-영 FTA 정식서명 (2019년 8월) |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
|  이스라엘 | 2016년 5월 | 한-이스라엘 FTA 협상 타결 (2019년 8월) | 창조경제 모델국가 |
|  인도네시아 | 2012년 3월 | 한-인도네시아 FTA 최종타 결(2019년 11월)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중미: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미발효)

● 협상중인 FTA | 7건, 24국

※ 2020년 02월 기준



| 상대국 | 추진현황 | | 의의 |
|---|----------|-------------------------|---------------------------|
| | 협상개시 | 진행상황 | |
|  RCEP (16개국) | 2013년 5월 | 28차 협상 개최 (2019년 9월) | 동아시아 경제통합 |
|  MERCOSUR (4개국) | 2018년 5월 | 3차 협상 개최 (2019년 7월) | 남미 최대시장 |
|  한국, 중국, 일본 | 2013년 3월 | 15차 협상 개최 (2019년 4월)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  에콰도르 SECA | 2016년 1월 | 5차 협상 개최 (2016년 11월) |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 보 확보 |
|  필리핀 FTA | 2019년 6월 | 4차 협상 개최 (2019년 9월) | 동서양이 조화된 젊은 시장 |
|  말레이시아 FTA | 2019년 6월 | 3차 협상 개최 (2019년 9월) | 한-말 교역, 투자확대의 제도적 틀 마련 |
|  러시아 FTA | 2019년 6월 | 1차 협상 개최 (2019년 6월) |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

• RCEP: 아세안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베네수엘라는 협상제외)

• 협상재개·여건조성 FTA | 2건, 2국

※ 2020년 02월 기준

| 상대국 | 추진현황 |
|---|---|
|  EAEU(5개국) | '16.3~'17.9 한·러 정상회담 계기 FTA협의를 위한 공동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
| | '16.8 EAEU 민간공동연구 완료 |
|  PA(4개국) | '17.3~'19.9 협상세척 협의 개시 |

- EAEU(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 PA(Pacific Alliance, 태평양동맹):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총 4개국)



II | FTA 활용

제1장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 일반적 기준 | | 완전생산기준 | | | |
|---------------|----------|--|--|---|--------------------------------|
| | | 실질적 변형기준 | 단독기준 | | |
| 일반적 기준 | 실질적 변형기준 | 단독기준 |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CC) 4단위 세번변경(CTH) 6단위 세번변경(CTSH) | |
| | | | 부가가치기준 | 부가가치율(RVC) | 직접법(BU) 공제법(BD) 순원가법(NC) |
| | | | | 비원산지재료가치비율(MC) | |
| | | 특정공정기준 | 재단, 봉제, 날염, 염색 등 | | |
| | 선택기준 | ▶ or 조건 예시 •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기준 or (세번변경기준 and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기준 and 특정공정기준) or 부가가치기준 • 부가가치기준 or 특정공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 and 특정공정기준) | | | |
| | | 조합기준 | ▶ and 조건 예시 • 세번변경기준 and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기준 and 특정공정기준 | | |
| | 보충적기준 | 미소기준(De minimis) | | | |
| | | 누적기준 | 재료누적 | | |
| | | | 상품누적 | | |
| | | | 공정누적 | | |
| 중간재 | | | | | |
| 간접재료 | | 공구, 금형, 설비, 연료, 촉매제 등 | | | |
| 재료가격 | | 원산지재료의 가격 | | | |
| |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 | |
| 공구, 부속품 | | | | | |
| 용기, 포장 | | | | | |
| 대체가능물품 | 개별법 | | | | |
| | 선입선출법 | | | | |
| | 후입선출법 | | | | |
| | 평균법 | | | | |
| 불인정공정(충분가공원칙) | | | | | |
| 직접운송원칙 | | | | | |
| 역외가공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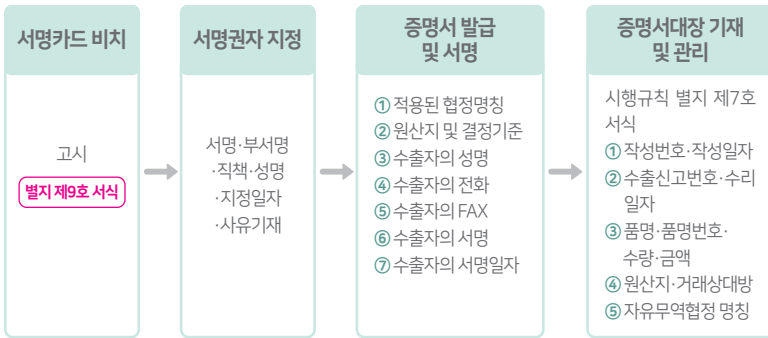
제2장 원산지증명서발급

● 수출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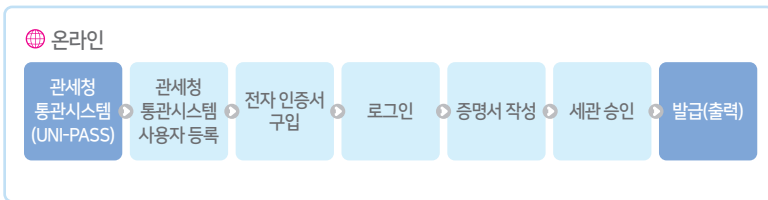
- ①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②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 국내원산지증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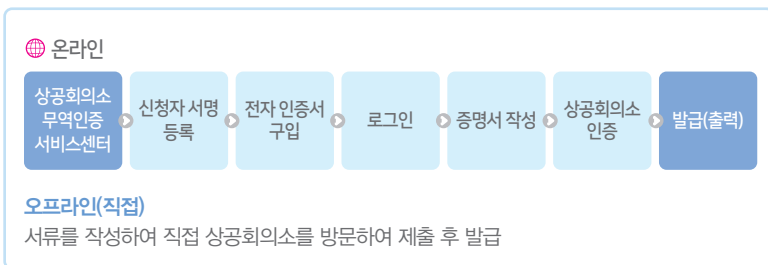
① 자율발급



② 세관발급



③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제3장 인증수출자 제도

● 수출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
| 인증기간 |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 협정 | 인증 | 인증 |
|--|---|---|
| 한-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 (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
| 한-EF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 |
| 기타 | 동 제도 미 적용 | |

제4장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포괄)확인서란?

-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 ②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사용

● 필요성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함

● 작성주체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작성

● 유통경로

- ① 수출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 생산자에게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을 함
- ② 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제5장 원산지검증

• 원산지검증 의의

- ① (협약)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
- ② (광의)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 (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③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계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

• 원산지검증 목적

- ①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②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③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④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 ⑤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 원산지검증 방법

- ①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 실시하고 각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 방식 적용
- ② 검증주체별 유형
 1.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2.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3.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아시아형)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 협정 | 간접검증 | 직접검증 | 회신 | | 협정근거 |
|-------|---------------------------------------|----------------------------|----------------------|---------------------|---------------------|
| | | | 회신기한* | 회신주체 | |
| 칠레 | - | 서면질의 및 정보 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 30일 | 수출자, 생산자 | 제5.8조 |
| 싱가포르 | - |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 30일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제5.7조 |
| EFTA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 당국의 참관 가능) | - | 15개월 | 관세당국 | 부속서1 제24조 |
| ASEAN |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 (간접)2개월 | (한)세관, (아)발급 기관 | 부속서3의 부록1 제14조~제16조 |
| 인도 |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 (예외적으로) 서면 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간접)3개월 | (한)세관, (아)발급 기관 | 제4.11조 ~ 제4.13조 |
| EU |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 | 10개월 | 관세당국 | 의정서 제27조 |
| 페루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서면질의 및 정보 요청, 방문조사 | (간접)150일 (직접)90일 |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수출자 등 | 제4.8조 |
| 미국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섬유 또는 의류에 한함) | 서면질의 및 정보 요청, 방문조사 | - |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 제4.3조(섬유류), 제6.18조 |
| 터키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 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 | 10개월 | 관세당국 | 의정서 제25조 |
| 호주 |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정보요청, 방문조사 | 30일 | (간접)발급기관, (직접)수출자 등 | 제3.23조, 제3.24 조 |
| 캐나다 | - | 서면질의 및 방문조사 | - | 수출자, 생산자 | 제4.6조 |
| 중국 |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 간접(6개월) | (간접)관세당국 | 제3.23조 |
| 뉴질랜드 | - |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 90일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제3.24조 |
| 베트남 |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 6개월 | (한)관세당국, (베)발급기관 | 제3.21조 |
| 콜롬비아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정보요청, 방문조사 | (간접)150일 (서면요청시) 30일 |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 제3.25조 |
| 중미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서면질의 및 정보 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 30일 | 조사대상자 | 제3.24조 |

※기한의 시작 기준일이 각 협정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협정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
|--|------------------------------------|---------------------------------------|
| 아세안(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중미(5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

관세종합상담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관세상담

- 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에 대한 모든 분야(수출입 통관, FTA, 품목분류, 평가·감면, 특송물품·휴대품 통관, 보세화물, 환급 등)에 걸쳐 'one-call,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①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해외 : 82-2-3438-5199)
- ② 2014.12. 밀수신고센터와 관세청 125콜센터로 통합운영되어 밀수신고는 '10'번을, 관세상담은 '20'번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 ③ 평일 9세에서 18시까지 가능하며(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야간, 휴일에는 ARS로 사전예약을 받아 다음날 우선 상담해 드립니다.

● 인터넷상담

- 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al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상담코너에서 상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② 같은 홈페이지 인터넷상담코너의 '상담사례조회(Q&A) / 자주하는 질문(FAQ)'를 검색하여 유사상담사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

- ① 전화예약(02-3438-5113) 후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무역협회를 통한 FTA상담

- ① FTA종합지원센터(Trade Call Center 1566-5114)



외국투자자를 위한 통관가이드 2021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1년 01월

집 필 | 이중철

주 소 | (06792)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6490-830-1 (93320)
979-11-6490-831-8 (95320)
(PDF)

| Copyright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1
외국투자가를 위한
통관가이드